#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97 발의연월일: 2025. 6. 10.

발 의 자:정성호·김영환·김태년

문진석 • 박성준 • 윤준병

이강일 • 이병진 • 조정식

한정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「대한민국헌법」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, 헌법재판소는 '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'이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함.

그런데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, 이를 대통령령인 「보안업무규정」에서 정하고 있어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 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한편, 국가기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,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밀 보호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구분함 (안 제4조).
- 다. 국가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라. 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다른 기관이 개발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안전성 확인을 거치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- 마.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(안 제23조).
- 바. 국가기밀의 해제 및 공개에 관한 사항과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해제하지 않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국가기밀해제·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25조 및 제26조).
- 사. 국가기밀을 누설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외국인 등을 위하여 누설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며, 그 죄를 실행 하기 전 자수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함(안 제31

조부터 제33조까지).

##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기밀을 보호하고 국가기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국가기밀"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으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·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이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.
- 2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### 가. 국가기관

- 1)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2)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 함한다) 및 그 소속기관
- 나.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
-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

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군사기밀에 관한 부분은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따른다.

## 제2장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 등

- 제4조(국가기밀의 구분) ①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I 급비밀,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국가기밀의 지정원칙) ① 국가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국가기밀의 지정 및 취급) ① 국가기밀은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 치가 있는 사실·물건 또는 지식이 생산되었을 때 해당 등급의 국가기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(이하 "국가기밀 지정권자"라 한다)이 지정한다.

- ② 국가기밀은 해당 등급의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밀 지정권자 및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각각 해당 등급 이하의 국가기밀을 지정하거나 취급할 수있다.
- 제7조(국가기밀 지정권자) ① 등급별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  - ②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대통령령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국가기밀의 지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직원은 위임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지정권을 가진다.
  - ③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은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최소한의 인원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 지정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기밀 지정 권한의 위임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가기밀을 누설하였을 때
- 2. 국가기밀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
- ⑤ 국가기밀 지정권자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 지정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)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지정 권자는 지정 권한이 있는 국가기밀 등급에 대한 취급 인가권자가 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국가기밀을 취급하거나 접근하는 소속 직원에게 국가기밀의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.
  - ③ 국가기밀 취급의 인가는 인가 대상자의 직책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기밀 취급 인 가권자는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가 기밀 취급인가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 및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④ 국가기밀 취급인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.
  - ⑤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취급을 인가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.
- 제9조(국가기밀 취급 등의 특례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체의 소

속 임직원에게 소관 국가기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Ⅱ급비밀 이하의 국가기밀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.

- ② 개인 또는 기업체 등이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의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으로서 국가기밀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사실·물건 또는 지식에 대하여는 그 국가기밀 취급 인가권자가 국가기밀로 지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체가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기밀을 보호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의 취급 인가를 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한 국가기밀 취급 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 다.
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.
- 제10조(국가기밀 등급 표시 등)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가기밀 등급 표시를 하고, 관리번호 및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·보존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기밀 등급 표시가 불가능하거나부적당한 것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기밀 등급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국가기밀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국가기밀의 소재를 숨기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밀의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및 관리되는 국가기밀의 일부나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첩보 또는 정보자료 등의 국가기밀은 보존기간과보호기간을 같게 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

- 제11조(국가기밀의 보호·관리의 원칙)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을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·수집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난·화재·파괴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고,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취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국가기밀을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지정·취급·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을 지정하기 이전 단계에서도 국가기

밀로 지정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 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·관리에 준하 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⑤ 국가기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국가기밀을 지정한 사람이 지정 당시 소속된 공공기관(제9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체가 생산한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을 지정받은 개인 또는 기업체를 말한다)에서 활용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또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국가기밀의 전자적 관리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국가기밀을 관리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13조(보안시스템의 개발 등) ① 국가기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·유통·저장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개발·제공한 소프트웨어·하드웨어 또는 암호자재(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) 등 기술적 장치(이하 "보안시스템"이라 한다)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보안시스템

- 을 작동·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암호도구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개발·관리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가 출연한 기관에 보안시스템 개발·제작·기술지원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기관이 개발·제작·기술지원 등을 한 보안시스템은 국가정보원장의 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.
- 제14조(국가기밀 보호조치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 방지 또는 국가기밀의 소재를 숨기기 위하여 시설·지역·장비 또 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하고, 국가기밀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외에 보안상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 또는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에 접근하거나 출입하려는 사람은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의 지정과 대상·방법 등 보호조치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국가기밀의 열람) ① 국가기밀의 열람은 해당 등급 이상의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그 국가기밀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

는 그 국가기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기밀을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I급비밀의 열람은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. 열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국가기밀의 복제·복사의 제한)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·복사하는 등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할 수 있다.
  - 1. [급비밀: 그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
  - 2.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: 그 지정권자가 국가기밀의 복제・복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 이상의 국가기밀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
  - 3. 전자적 수단으로 관리되는 국가기밀에 대하여 따로 보관용 국가 기밀을 만들 경우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국가기밀 원형을 재현하는 경우에는 그 원

본과 동일한 국가기밀 등급과 함께 보호기간을 표시하고 사본번호 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④ 그 밖에 국가기밀 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국가기밀의 재지정 등)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밀의 원본에 대하여 등급 또는 보호기간·보존기간의 변경 등 재지정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조약이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제공받은 기밀로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그 조약 또는 국제협약 등에 보호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재지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국가기밀의 이관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록물로 생산된 국가기밀의 원본을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.
  - 1.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이 해제된 경우
  - 2. 국가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
  - ② 국가기밀 기록물 외의 국가기밀 자재·장비 등은 보존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기능이 소멸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공급한 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국가기밀 기록물 원본의 이관 등 관리에

필요한 사항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19조(국가기밀의 파기 등)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국가기밀을 안전 하게 보호·관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 는 등급 이하의 국가기밀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기밀을 파기할 수 있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비상시와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국가기밀을 안전하게 파기하거나 반출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국가기밀의 습득·분실 등 신고) ① 누구든지 국가기밀을 습득 한 자는 국가정보원에 습득한 국가기밀을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사람은 보관하는 국가기밀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국가기밀관리기록부)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작성·분류 ·접수·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 다만, I급비밀에 대한 국가기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제22조(국가기밀 소유 현황 통보)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등 급별 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,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(국회 정보위원회에의 연차보고)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이 법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현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보안사고 조사)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 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.
  - 1. 국가기밀의 누설 또는 분실
  - 2.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보호구역 접근 또는 출입
  -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국가기밀의 해제와 공개

- 제25조(국가기밀의 해제) ① 국가기밀을 지정한 자는 국가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국가기밀을 해제하여야 한다.
  - 1. 국가기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때
  - 2. 국가기밀 지정권자의 해제요청이 있을 때
  - 3. 그 밖에 국가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 - ② 보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국가기밀은 그 보호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지정일부터 3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에 자동 해제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유효한 전시계획 또는 비상대비계획
  - 2. 국방 및 통일 · 외교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보
  - 3. 신원정보를 포함한 정보활동의 출처·수단 또는 기법 관련 사항
  - 4. 국가 암호체계 관련 사항
  - 5. 국가기밀의 해제로 인하여 법률·조약 또는 국제협약의 위반을 초래하는 사항
  - 6.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해제에서 제외되는 국가기밀에 대하여는

- 그 국가기밀의 지정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지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기밀의 해제 및 제2항에 따라 국가기밀에서 해제되거나 국가기밀로 재지정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6조(국가기밀의 공개) ① 국가기밀 지정권자는 지정한 국가기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.
  - 1. 국가의 안전보장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국가기밀을 알려야 할 명 백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
  - 2.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
  -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국가기밀은 공개된 때부터 국가기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.
- 제27조(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)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. 이경우 국가기밀을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람은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1.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 요구를 받았을 때
  - 2. 국제협상에 필요할 때
  - 3. 조약·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국가기밀을 제공받아 국가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기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기밀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국가기밀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제5장 국가기밀 관리기관

- 제28조(국가정보원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
  - 2. 국가기밀 관리기법의 연구 · 보급 및 표준화
  -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안시스템의 개발 및 안전성 확인
  - 4.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기밀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취약점 보완·지원
  - 5.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
  - 6.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밀을 지정하거나 국가기 밀의 취급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
  - ②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 항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 헌법기관 행정·사무를 처리하 는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  -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가기밀의 분실·누설 등의

경위를 조사할 때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.

-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. 이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제29조(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
- 제29조(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밀해제·공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 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  - 1.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기밀 해제 제외에 관한 사항
  - 2.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밀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  - 3. 제27조에 따른 국가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관한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 -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국가기밀의 해제·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,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- 제30조(국가기밀 관리기관의 협조 등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밀 보호·관리에 관하여 국 가정보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의 분실 ·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

거나 그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 보하고,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제6장 벌칙

- 제31조(벌칙)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  -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국가기밀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
  - 2.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·복 사하는 등 국가기밀의 원형을 재현한 자
  - 3. 제27조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설명을 들은 국가기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자
 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

- 2.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
- 3.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기밀을 손괴·은닉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
- ⑤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기밀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
- 2. 제27조제2항후단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장의 국가기밀 제출 요 구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⑦ 과실로 제1항 또는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제32조(가중처벌) 외국 또는 그 구성원을 위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5 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.
- 제33조(형의 감면)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이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, 소속 공공기관 또는 국가정보원 등에 자수하거나 그 죄를 지

은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기밀 지정 관련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생산·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기밀은 제5조에 따라 각각 해당 등급으로 지정 된 국가기밀로 본다.

제3조(국가기밀 취급 인가자 관련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 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각각 그 국가기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"국가 기밀(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·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"을 "「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밀(이하 "국가기밀"이라 한다)"로, "국가 기밀"을 "국가기밀"로 한다.

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국가 기밀"을 각각 "국가기밀"로 한다.

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호 중 "「군사기밀보호법」"을 "「국가기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군사기밀 보호법」"으로 한다.